

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4-1002호

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「의료법」 제59조제2항에 따라 ‘업무개시명령서’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 발송하여야 하나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우편(등기)은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하고자 합니다.

2024년 4월 12일
강남구청장

「의료법」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

- 공고사유: 「의료법」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
- 관련근거: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
- 공고대상: 총 2명

이름	의사 면허번호	소속 의료기관
성○림	134453	강남차병원
박○은	134161	강남차병원

4. 업무개시명령

- 처분 근거: 「의료법」 제59조제2항
- 처분 내용: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, 동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여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「의료법」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해 긴급한 명령이 필요한 경우로 사전 통지는 생략되었음

5. 효력 발생

본 공시송달은 공고일(2024. 4. 12.)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
6. 권리구제 안내(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)

- 행정심판 청구: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행정소송 청구: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7. 담당자: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의약과 의무1팀(02-3423-7155)